

#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10. 25.

제 안 자 : 김화수 의원외

## □ 수정 이유

- 조문 이해의 용이성, 명확성을 기함은 물론, 현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

## 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3조(도의 책무)제3항 “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.”를 “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, 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·군에 시상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동조 제3조제4항중 “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”를 “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,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”로 함
- 안 제11조제1항중 “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”를 “정기회의는 연 2회(상·하반기) 소집하고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회의개최 3일전까지”를 “회의개최 7일전까지”로 함
- 제13조를 신설하여 그 내용을 “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함

##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(도의 책무)제3항 “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.”를 “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, 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·군에 시상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동조 제4항중 “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”를 “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,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11조제1항중 “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”를 “정기회의는 연 2회(상·하반기) 소집하고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회의개최 3일전까지”를 “회의개최 7일전까지”로 한다.

제13조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	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
<b>제3조(도의 책무) ① ② (생략)</b> <u>③</u> 도지사는 부실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<u>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.</u>	<b>제3조(도의 책무) ①~② (제정안과 같음)</b> <u>③</u> ..... <u>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,</u> <u>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·군에 시상할 수 있다.</u>
<u>④</u>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<u>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</u> <u>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.</u>	<u>④</u> ..... ..... <u>하도급</u> <u>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, 이행사항을</u> <u>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
<b>제11조(회의) ①</b>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<u>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</u> <u>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</u> <u>집한다.</u>  <u>②</u>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 <u>최 3일전까지</u>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<u>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</u> <u>아니하다</u>  <u>③~⑤ (생략)</u>	<b>제11조(회의) ①</b> ..... ..... <u>정기회의는 연 2회(상·하반기) 소집하고</u> ..... ..... <u>②</u> ..... <u>회의 개</u> <u>최 7일전까지</u> ..... ..... ..... <u>③~⑤(제정안과 같음)</u>
<u>(신설)</u>	<b>제13조(시행규칙)</b>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